

『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노인종합복지관장 박 상 호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소관 부서의 명칭 등 행정조직 체계를 현행화하고,
- 선산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중이용 시설이용에 대한 공공질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분관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반영(안 제2조제2호)
 - 선산노인종합복지관 :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의거 소관부서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선산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임.
- 검토 결과,
 - 선산노인종합복지관 준공 및 관리이관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 -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대비한 선산권역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시설 접근성 및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, 보다 나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